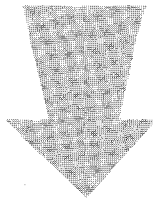
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

난방설비공사에 부수되어 설치하는 기름보일러 등의 설치 및 확인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은 지난해 12월 본지에 게재된 바 있으나 일부 회원사가 충분히 인식치 못함에 따라 혼란의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게재합니다.

이와함께 가스사용시설공사 중 가스용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설치 시공자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반영되어 지난 4월 15일자로 개정, 공포됨에 따라 이를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관련 업무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.

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내용 중 관련사항

(*92. 6. 14부터 시행)

구 분	개정 (변경) 내용	비 고
- 기름 및 구명탄 보일러 설치·시공	- 설비공사업 면허자는 시공업 (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)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설치·시공할 수 있다. - 시공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	- 법 제41조
- 기름 및 구명탄 보일러 확인업무	- 확인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의 폐지 로 모든 시공업자는 확인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	- 법 제83조

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내용 중 관련사항

(*92. 4. 15부터 시행)

구 분	개정 (변경) 내용	비 고
- 가스용 온수보일러 시공자 자격	- 설비공사업 면허자는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시공업(제1종 또는 제2종) 신고한 후 ② 가스보일러 시공자 양성 교육 이수하고 ③ 시·도지사에게 온수보일러 시공자 등록하면 된다.	- 법 제12조 - 령 제11조, 제13조 - 시행규칙 제13조 - 한국가스안전공사 실시 (교육시간 등은 추후

-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가입 문제	- 설비공사업 면허자 등이 시공업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은 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. - 설비공사업 면허자 등이 시공업 신고 를 한 경우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. (기존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설비공사업 면허자는 92. 6. 14 이후에 시공업 신고 를 할 수 있다.)	- 시행규칙 개정시 법제화 예정 - 법 77조 특히 이 부분은 열관리시공협회 회원으로의 가입 여부에 대한 혼동으로 회원사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나, 설비공사업 면허자 등이 시공업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- * 참고사항
-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용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만 설치할 수 있다. (내관 등 가스관은 시공할 수 없다.)
 - 건설업법에 의한 **경미공사(500만원 미만 공사)만 시공할 수 있다.**
 -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**보일러 시공업자가** 가스보일러 양성교육 이수 후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도 가스용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설치공사중 **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.** (내관 등 가스배관은 시공할 수 없다.)
 - **설비공사업 면허자가 이 미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**을 하였거나, 차후에 할

안내함)

	경우에는, 모든 가스시설을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온수보일러 시공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.	
- 가스용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자격(공사현장 배치 기술자)	- 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이상 (고압가스 화학, 기계기능사 2급은 당연 포함됨) -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자(=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이수자,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,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자)	- 시행령 제 12조 제3호 단서 적용됨 - 시행규칙 제 13조의 2
	* 참고사항 - 가스용 온수보일러 시공자는 경미공사(500만원 미만)만 시공 관리 가능한 자이다. - 500만원 이상의 가스시설 공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	- 시행령 제12조

● **에너지를 절약합시다(가정편)** ●

(자료제공 : 에너지관리공단)

창문은 이중창이나 복층유리로 틈새 바람을 막자

주택, 빌딩에서 열의 출입이 가장 심한 곳이 창과 문이다. 더우기 틈새바람이 통하면 크게 열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. 이중창이나 복층유리는 단열효과를 가져다 준다.

● **행동지침**

- 1) 창문을 새로 수리할 때는 외측에 창 하나를 더 설치하자.
- 2) 창문이 낡아 새로 달 때는 복층유리로 하자.
- 3) 겨울철에는 문에 문풍지를 붙이자.
- 4) 창문 틈에는 오피지, 고무셀 등을 붙여서 찬바람을 막자.
- 5) 단층 유리창에는 폴리에틸렌필름을 붙여 복층유리의 효과를 내자.
- 6) 플라스틱 창문은 틈새바람이 없고 개폐성이 좋다.

● **효과분석**

주택당 연간 난방비 40만원 기준
 10% 절약 : 4만원
 300만세대 적용 × 4만원 = 1200억원